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법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관련 안내

1. 관련근거 :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-1218(2014.04.03)

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-15호(2014.3.31)

2. 위와 관련하여 2014.3.31. 자로 「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」
이 개정·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설 및 변경 항목에 대한 청구코드
및 산정금액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.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전문 1부.

2.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1부.

3.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설 및 변경항목 청구코드 1부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차장 우영하 국장 류향수

시행 : 보험 제 2014-166 (2014.04.08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

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5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wyh@kha.or.kr